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기술수출입법

주체87(1998)년 6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19호로 채택

주체88(1999)년 3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07호로 수정보충

주체105(2016)년 3월 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008호로 수정보충

주체108(2019)년 11월 2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64호로 수정보충

주체112(2023)년 1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183호로 수정보충

제1조 (기술수출입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기술수출입 법은 기술수출입에 서 제도와 질서를 엄 격히 세워 자립
적민족경제를 튼튼히 하며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기술수출입법의 적용대상)

이 법은 발명, 특허기술, 기술비결 같은 선진기술과 그것이 체현된 설비 및 구성요소 같은 기술
수출입대상을 수출입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적용한다.

제3조 (기술수출입의 장려, 제한, 금지원칙)

국가는 선진적 인 기술수출입대상을 수출입하는것을 장려한다.

국내에서 연구개발 및 생산할수 있는 대상의 수입, 국가의 안전과 리익에 지장을 줄수 있는 대상
의 수출입은 제한 또는 금지한다.

기술수출입 의 장려, 제한, 금지 항목은 중앙과학기술행정 지도 관리 기관이 정 한다.

제4조 (기 술수출입 계획 및 계 약규률준수원칙)

기술수출입은 인민경제 계획과 계 약에 따라 한다.

국가는 기술수출입에서 계획 및 계약규률을 엄격히 지키도록 한다.

제5조 (기술수출입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기술수출입분야에서 세계 여러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6조 (다른 법규와의 관계)

기술수출입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

제7조 (기술수출입당사자)

기술수출입은 중앙무역지도기관의 영업허가를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영업허가를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술수출입당사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8조 (위탁수출입)

수출입업종이 없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기술을 수출입하려 할 경우에는 기술수출입에 대한 영업허가를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에 위탁하여 할 수 있다.

제9조 (기술수출우선권)

기술을 개발한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술수출조건을 갖추고 있을 경우 그 기술에 대한 수출우선권을 가진다.

제10조 (기술수출입허가)

기술수출입대상을 수출입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의 기술수출입허가(합의포함)를 받아야 한다.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은 기술수출입허가에서 과학성과 객관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 11 조 (기술수출입허가신청)

기술수출입허가를 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술무역봉사체계를 통하여 해당 기술의 선진수준, 경제적효과성 같은것을 검토한 다음 기술수출입 허가신청문건을 작성하여 중앙과학기술 행정지도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기술수출입 허가신청문건에는 거래할 나라, 회사명칭, 기술명 같은것을 밝히며 기술제안서, 기술평정서, 지적소유권등록문건사본 같은것을 첨부한다.

제12조 (수출입하려는 기술의 심의)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은 기술수출입 허가신청 문건을 접수한 경우 15일안으로 수출입하려는 기술에 대한 심의를 하여야 한다.

심의에서는 과학기술적 담보, 기술경제적효과성, 지적소유권 등록관계, 비밀담보, 수출입가능성, 국산화가능성, 국내원료, 연료의 리용가능성, 설비의 기술적운영가능성 같은것을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제13조 (심의에 필요한 조건보장)

중앙과학기술행정 지도관리 기관은 수출입 하려는 기술에 대한 심 의를 위하여 전문일군을 심 의에 참가시키거나 해당 전문기관에 필요한 분석을 의뢰할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의 요구에 제때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 (기 술수출입허 가 및 부결)

중앙과학기술행정 지도관리 기관은 수출입 하려는 기술에 대한 심 의를 한 다음 국가전자무역 수속체계를 통하여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그 결과를 제때에 통지하여야 한다.

기술수출입을 허가하였을 경우에는 기술수출입허가통지를, 부결하였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밝힌 부결통지를 한다.

제15조 (기술수출입합의)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은 해당 기술에 대한 심의를 이미 받았거나 심의를 따로 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기술심의공정을 거치지 않고 기술수출입허가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5 일안으로 검토하고 기술수출입합의를 할수 있다.

기 술수출입합의 대상은 중앙과학기술 행 정 지 도관리 기관이 정 한다.

제16조 (기술수출입계획)

중앙무역지도기관의 영업허가와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의 기술수출입허가를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계획기관으로부터 기술수출입계획을 받아야 한다.

국가계 획 기관은 중앙무역 지도기관의 영 업 허가과 중앙과학기술행정 지도관리 기관의 기 술 수출 입허가를 받은 대상에 대하여서만 기술수출입계획을 세워야 한다.

제17조 (기술수출입 계약의 체 결과 리 행)

해 당 기 관, 기 업 소, 단 체 는 기 술수출입 계약을 정 확히 맺 고 리 행 하여야 한다.

중요기 술수출입 계 약은 중앙무역 지 도기 관의 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한다.

제18조 (가격승인)

중앙무역지도기관은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 기관의 기술수출입허가와 국가계획기관의 기 술수출입계획을 받은 대상에 대하여 가격승인을 하여야 한다.

제19조 (기술수출입을 위한 자금지출)

기관, 기업소, 단체와 해당 거래은행은 기술수출입허가와 기술수출입계획, 가격승인을 받은 대상에 대하여서만 자금결제를 하여야 한다.

제20조 (기술수출입대상에 대한 검사)

세관과 수출입품검사기관, 해당 기관은 기술수출입대상을 정확히 검사하여야 한다.

제21조 (기술수출입수속의 정확성, 신속성보장)

중앙무역지도 기관과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전자 무역 수속체계와 기술무역 봉사체계의 리용을 바로하여 기술수출 입수속에서 정확성과 신속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2조 (번 자금의 리용)

기술을 수출하여 번 자금의 일정한 몫은 과학기술발전에 쓴다.

제23조 (기술수출입사업에 대한 지도)

기술수출입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무역지도 기관과 중앙과학기술 행정 지도관리 기관이 한다.

중앙무역 지도기관과 중앙과학기술행정 지도관리 기관은 국가의 기술수출입정책 집행을 위한 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24조 (기술수출입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기술수출입 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무역 지도기관과 중앙과학기술행정 지도관리 기관,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무역지도기관과 중앙과학기술행정 지도관리 기관, 해당 감독통제 기관은 기술의 수출입 정 형과 수입한 기술의 리용정형 같은것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 25조 (기술수출 입허 가취 소)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기술수출입과 관련한 질서를 어긋을 경우 기술수출입허가를 취소할수 있다.

제26조 (민사적책임)

기술수출입과 관련한 계약을 어겨 재산상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책임있는 당사자에게 손해보상, 위약금, 연체료지불 같은 민사적책임을 지운다.

제27조 (벌금처벌)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벌금을 물린다.

1. 기술수출입허가를 받지 않고 기술을 수출입하였을 경우 150만원
2. 허가받은 내용과 맞지 않게 기술을 수출입하였을 경우 20만~150만원

제28조 (중지처벌)

기술수출입허가를 받지 않고 기술을 수출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의 수출입을 중지시킨다.

제29조 (경고, 엄중경고,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강직, 해임, 철직처벌)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정상에 따라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 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1. 기술수출입허가를 바로하지 않아 인민경제발전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2. 기술수출입허가를 받지 않은 대상을 수출입하였을 경우
3. 기술수출입허가를 받지 않은 대상에 대하여 기술수출입계획을 세웠을 경우
2. 기술수출입허가를 받지 않은 대상을 수출입하였을 경우
3. 기술수출입허가를 받지 않은 대상에 대하여 기술수출입계획을 세웠을 경우
4. 기술수출입허가를 받지 않은 대상에 대하여 가격 승인을 해주었을 경우
5. 기술수출입허가를 받지 않은 대상에 대하여 자금결제를 하였을 경우
6. 기술수출입허가를 받지 않은 대상에 대하여 해당 검사를 진행하고 국경을 통과시켰을 경우
앞항의 행위를 여러번 한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30조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긴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형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